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2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겨울철 급증으로 취약한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방문
갱신 요건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

*행정명령, 또한 실험실이 뉴욕 시료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주 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검사 용량을 늘리고 지연을 줄임*

1월 15일 만료되는 공개 회의법에 따라 입법부에 원격으로 회의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Hochul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 갱신 요건을 지자체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겨울철 급증세와 싸우면서, 가장 취약한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면제 혜택에 의존하는 수천 명의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은 집에 머무르기 위해 건강과 안전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저는 지방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취약한 뉴욕 시민들이 올겨울 집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는 뉴욕주가 오미크론 변종과 사례의 물결을 퇴치함에 따라 공공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추가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Hochul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검사 용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인증된 임상시험소가 뉴욕 시민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외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은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 현재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9월에 통과된 법률과 일관되게 1월 15일까지 원격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원격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회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혜택을 받은 모든 재산 소유자에 대해 개인이 1차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증서에 다른 소유자를 추가하거나 재산을 새 소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2022년 혜택을 자동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